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2016. 4.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들어가는 말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으로 흔히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에 비유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 개원부터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을 갖춰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 는 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II

4 · 13 총선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자는 92명은 이는 전체 30.7%에 해당한다.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를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은 당선자 122명 중 30명으로 약 25%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중 50명으로 40.7%, 국민의당은 38명 중 5명으로 13.2%를 차지한다. 정의당은 6명 중 3명, 무소속은 11명 중 4명이 전과자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표 1】4·13 총선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정당별 현황

구분	전체 당선자		누이 있는 선자	전과 건수
	Τ	명	비율(%)	
새누리당	122	30	24.6	37
더불어민주당	123	50	40.7	84
국민의당	38	5	13.2	6
정의당	6	3	50	6
무소속	11	4	36.4	8
총계	300	92	30.7	14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으로 당선자의 50%가 전과자다. 서울특별시는 49개 선거구에서 16명이 전과자로 전체 32.7%, 부산광역

시는 18명 중 6명, 인천광역시는 13명 중 4명, 경상남도는 16명 중 5명이 전과 자로 조사되었다(【표 2】참조).

【표 2】4·13 총선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지역별 현황

연번	7) Cd	서기그 스	전과기	록이 있는 당선자
2 U	지역	선거구 수	명	비율(%)
1	서울특별시	49	16	32.7
2	부산광역시	18	6	33.3
3	대구광역시	12	2	16.7
4	인천광역시	13	4	30.8
5	광주광역시	8	1	12.5
6	대전광역시	7	2	28.6
7	울산광역시	6	2	33.3
8	세종특별자치시	1	1	100
9	경기도	60	30	50
10	강원도	8	2	25
11	충청북도	8	2	25
12	충청남도	11	3	27.3
13	전라북도	10	1	10
14	전라남도	10	2	20
15	경상북도	13	2	15.4
16	경상남도	16	5	31.3
17	제주특별자치도	3	2	66.7
18	전국(비례)	47	9	19.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가보안법위반' 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명, 음주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 20명, 음주 외 '도로교통법위반' 12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2명 등이다.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내란음모·소요죄, 반공법위반 등 전과 내용은 다양하다(【표 3】참조).

【표 3】4·13 총선 당선자 전과 건수 내용별 분류

연번	전과 내용	건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3
2	국가보안법위반	2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외)	12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3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8	업무방해	7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7
10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11	일방교통방해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등)	5
13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쟁의조합법위반	6
14	내란음모,소요	4
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4
16	상해	4
17	공무집행방해	4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 신망침해)	3
19	반공법위반	2
20	기타	4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 건수가 1건 이상인 당선인은 35명이며, 최다 건수는 이용득 당선인(더민주)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5건이다. 이외 박용진 당선인(더민주), 김철민 당선인(더민주)이 각각 4건, 홍영표 당선인(더민주), 설훈 당선인(더민주), 이학영 당선인(더민주), 노회찬 당선인(정의당), 김경수당선인(더민주), 김종훈 당선인(무소속) 등이 각각 3건이다(【표 4】참조).

【표 4】4·13 총선 전과 기록 보유 당선자 전과 내용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1		지상욱	새누리	중구 성동구 을	1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00만원	`91.05.23
2		민병두	더만주	동대문 구을	1	국가보안법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잔형사면특복)	`87.11.17 (`88.12.2 1.)
3		서영교	대주	중랑구 갑	1	국가보안법 위반(기 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특별사면)	`87.04.13 (`87.07.1 0)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법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91.06.14
4	서 울 16	박홍근	대 단	중일 일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화염병사용등 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94.05.13
5		기동민	더만주	성북구 을	2	공문서위조,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1년	`92.07.14
				핃		공무집행방해	벌금 400만원	`12.10.29
	박용진	wl	-اساب	a) H =	4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특수공무집행방 해,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특별복권)	`94.09.26 (`98.03.1 3.)
6		박용진	邻	강북구 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일반교통방 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잔형면제사면) (특별복권)	`00.03.21 (`03.04.3 0) (`04.05.2 6)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일반교통방 해	징역1년 (특별복권)	`02.01.29 (`03.04.3 0)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벌금 100만원	`09.05.26
7		우원식	더만주	노원구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징역3년	`82.03.23
				7] -1] 17		국내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특별사면)	`87.12.30 (`88.02.2 7)
8		우상호	대단	서대문 구갑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특별사면)	`88.07.25 (`88.12.2 1)
9		손혜원	데면	마포구 을	1	건축법 위반	벌금 100만원	`02.05.10
				야치구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99.08.18
10		김용태	새누리	양천구 을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벌금 250만원	`03.09.16
11		김성태	새누리	강서구 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원	`86.06.03
12		심재권	데면	강동구 을	1	국가보안법(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72.09.11
13		이인영	대 <u></u>	구로구 갑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 법 위반(기타)	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특별사면)	88.06.30 ('88.12.21)
14		이훈	더뚠	금천구	2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87.05.02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특별사면.)	`87.12.28 (`88.02.2 7)
15		김성식	국민의 당	관악구 갑	1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특별사면복권)	`87.07.20 (`88.12.2 1)
16		최명길	더만주	송파구 을	1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벌금 300만원	`15.09.03
17		김무성	새눠	중구 영도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	벌금 1000만원	`99.07.16
10		근미거	וועקו	해운대	0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89.09.11
18		하태경	새누리	구갑"	2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특별복권)	`91.12.30 (`95.08.1 5)
19		유재중	새누리	수영구	1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95.11.13
20	부 산 6	최인호	새누리	사하구 갑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중감금치상,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호염병사용등의 첩리 에관한법률위반, 노 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중감금 미수, 국가보안법위 반(기타)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특별사면복권)	`90.09.12 (`93.03.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50만원	`00.04.12
21		김영춘	대단	진구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교사,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특별사면)	`85.03.28 (`87.07.1 0)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최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22		장제원	무소속	사상구	1	무고	벌금 300만원	`99.09.14
				ナ ねつ		대통령긴급조치9호위 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일반복권)	`78.05.12 (`80.02.2 9)
23	대 구 2	김부겸	대۴	수성구 갑	2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특별복권)	`93.02.22 (`95.08.1 5)
24		조원진	새누리	달서구 병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 반	벌금 150만원	`92.04.03
						건조물침입, 폭력행 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노동 쟁의조정법위반	징역 1년 (특별복권)	`86.02.15 (`87.07.1 0)
25		홍영표	홍영표 더만주	부평구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노동조 합법위반,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건조물 침입	징역 1년 6월 (특별복권)	1991.12.10 (1995.08.1 5.)
	인					노동조합법위반	벌금 200만원	`94.12.15
26	천 4	송영길	데뚜	계양구 을	2	공문서변조, 절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특별사면)	`85.04.16 (`87.07.1 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03.01.14
27		이학재	새누리	서구갑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특별복권)	`95.10.27 (`98.08.1 5.)
28	4	신동근	대۴	서구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특별복권)	`86.03.21 (`87.07.1 0.)
29	광 주 1	최경환	국민의 당	북구을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징역1년6월 (특별사면)	`82.05.22 (`83.12.2 2)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징역10월 (특별사면)	`86.08.26 (`88.02.2 7)
30	대	이상민	더만주	유성구 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00만원	`04.07.27
31	네 전 2	이장우	새누리	동구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	`94.07.14
31	2	Y'ST	4174	51	2	허위공문서작성, 허 위작성공문서행사	벌금150만원	`11.11.16
32		오영훈	咿	제주시 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집회및시위에관 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특별복권)	`89.09.08 (`93.03.0 6)
33	제 주 2	위성곤	대	서귀포 시	1	공용물건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지방의회의 원선거법위반, 집시 및시위에관한법률위 반,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특별사면복권)	`92.11.06 (`93.03.0 6)
34		김영진	더만주	수원시 병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90.12.13
35	경	김병관	대주	성남분 당갑	1	업무상배임,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벌금300만원	`05.09.16
36	フ] 30	김병욱	데뚜	성남분 당을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300만원	`14.05.29
				부천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 반	벌금200만원	`94.04.28
37		설훈	대۴	마일 미을 기를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 손,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사면특복)	`04.11.30 (`07.02.1 2)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50만원	`07.05.08
38		김한정	더만주	남양주 시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현존건 조물방화예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특별사면)	`86.08.09 (`87.07.1 0)
39		박정	더만주	파주시	2	저작권법위반	벌금500만원	`98.01.30
33		'A' 8	니간	477	۷	도로교통법위반	벌금100만원	`97.05.29
40		ગીનીમ ને	e lm] ス	성남시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벌금 120만원 (특별사면복권)	`96.08.06 (`99.02.2 5.)
40		김태년	대단	성남시 수정구	2	국가보안법위반(기 타)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특별사면복권)	`97.02.18 (`99.02.2 5.)
41		신상진	상진 새뉴리	성남시 중원구	2	국가보안법위반, 반 공법위반, 계엄법위 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특별복권)	`82.06.29 (`84.08.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벌금 2,000만원	`06.01.19
42		호민조	새누리	의정부 시을	1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위반, 출판 물에 의한 명예훼손	벌금 250만원 (특별복권)	`06.10.18 (`10.08.1 5.)
43		이종걸	더만주	안양시 만안구	1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벌금 300만원	`99.10.28
A 4		(خ)اتا (خ)	رابال-1	안양시	0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형의면제 징역 5년 (특별복권)	`80.09.17 (`83.12.2 3.)
44		심재철]재철 새누리	안양시 동안구 을	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특별사면)	`93.01.20 (`95.08.1 5.)
45		김경협	더만주	부천시 원미구	3	집회및시위에관한 법 률위반	징역 10월	`85.10.18
				갑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86.07.23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자격정지 1년6월 (특별복권)	(`88.02.2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11.12.15
46		원혜영	더만주	부천시 오정구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대통령긴급조 치9호위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76.09.02
47		유의동	새누리	평택시 을	1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운전)	벌금 100만원	`13.10.24
48		김성원	새누리	동두천 시연천 군	1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운전)	벌금 150만원	`08.06.20
						건축법위반	벌금 500만원	`98.08.14
			민 대단주	안산시 상록구 을	4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운전)	벌금 150만원	`00.03.31
49		김철민				건축법위반	벌금 700만원	`00.0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 반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02.11.12
				- 4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3.11.23
50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 갑	2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03.04.17
51		김현미	더만주	고양시 정	1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08.12.17
J1		ʹըฃ비	니다	정	1	ㅇㄱᆫᄼᅵᆸ 게딘	(특별복권)	(`10.08.1 5.)
52		<u> </u>	대 ^주	구리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징역10월 (특별복권)	`85.06.28 (`87.07.1 0.)
53		안민석	데만	오산시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11.07.06
54		조정식	데만	시흥시	1	도로교통법위반 (음	벌금 150만원	`00.07.05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최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을		주측정거부)		
						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79.10.04
55		이학영	대۴	군포시 을	3	국가보안법위반, 반 공법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특별사면)	`80.05.02 (`88.12.2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벌금 100만원 (특별복권)	`00.07.07 (`03.08.1 5.)
56		한선교	새누리	용인시 병	1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운전)	벌금 100만원	`02.08.09
57		윤후덕	대۴	파주시 갑	2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 1년 6월 자격장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특별시면)	`87.12.12 (`88.12.2 1.)
				· H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91.06.12
58		김두관	대주	김포시 갑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1년 (특별복권)	`86.07.21 (`87.07.1 0.)
F0		ネ ラテ	יווראו	김포시	0	지방세법위반	벌금 100만원	`02.07.02
59		홍철호	새귀	김포시 을	2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운전)	벌금 150만원	`04.04.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사면특복)	`04.08.13 (`06.08.1 5.)
60	서청원 새	새누리	화성시 갑	2	정치자금법위반, 공 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6월 (특별감형, 특별복권)	`08.11.12 (`10.08.1 5., `13.01.31 .)	
61		이원욱	더만주	화성시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징역 3년	`86.03.26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이		률위반 특수공부집행방해치 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현존 건조물방화예비	(병합처분) (특별사면복권)	(`88.02.2 7.)
62		소병훈	더만주	광주시 갑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 반	벌금 150만원	`94.05.21
				H		도로교통법위반 (음 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	`09.05.22
63		정병국	새누리	여주시 양평군	1	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특별사면)	`87.09.30 (`88.12.2 1.)
64	경 북	이철우	새누리	김천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 반	벌금150만원	`99.04.08
65	2	백승주	새누리	구미시 갑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50만원	`03.04.01
				창원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특별감형) (특별복권)	`90.06.23 (`91.05.2 5)(`98.08. 15)
66		노회찬	정의당	성산구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00만원	`01.04.06
	경 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11.10.28
67	5	서형수	대 우	양산시 을	1	모욕, 업무방해	벌금100만원	`14.06.13
68		엄용수	새누리	밀양의 려 함안창 녕	1	상해	벌금700만원	`11.07.27
69		김경수	대주	김해시 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1년 (특별사면)	`88.08.30 (`88.12.2 1)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90.03.20
						국가보안법위반(기 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92.05.29
70		김한표	새누리	거제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 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02.02.26
	울 산 2	윤종오	2 무소속	북구	2	업무방해	벌금 150만원	`10.02.17
7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벌금 1000만원	`13.01.17
		김종훈	무소속	동구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 집회및시위에관 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특별사면복권)	`90.01.18 (`93.03.0 6)
72						특수공무집행방해 범 인도피	벌금500만원	`03.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100만원	`08.03.13
	세 종 1		무소속	세종특 별 자치시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위반, 내란음모	형집행정지, 징역10년 (특별사면복권)	`74.09.28 (`87.07.1 0)
73						계엄법위반, 내란음 모	징역10년 (형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80.09.17 (`82.12.2 4) (`87.07.1 0)
74	강	김기선	새누리	원주시 갑	1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벌금 100만원	`00.01.20
75	원 2	이양수	새궈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1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	벌금 250만원	`04.04.01
76	충	정우택	새누리	청주시 상당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04.05.31
77	북 2	박덕흠	새누리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1	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	`97.09.12 ·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78	충남 3	강훈식	대۴	아산시 을	2	도로교통법위반 (무 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03.12.10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11.08.24
79		김종민	대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1	국가보안법 위반 (기 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특별사면)	`87.03.14 (`88.02.2 9)
80		홍문표	새누리	홍성군 예산군	1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03.05.21
81	전 북 1	김광수	국민의 당	전주시 갑	1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 에관한 법률위반	징역1년6개월 (특별복권)	`86.12.03 ('88.02.27)
82	전 남 2	박지원	국민의 당	목포시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외국환거래법위 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 재)	징역3년 (잔형면제사면) (특별복권.)	2006.05.25 (`07.02.1 2) (`08.01.0 1)
83		항구홍	국민의 당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06.12.26
84		이임자	새누리	비례대 표	1	도로교통법위반	벌금100만원	`96.01.22
85	전 국 9	문진국	새누리	비례대 표	1	배임수재	벌금500만원	`05.11.22
86		유민봉	새누리	비례대 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벌금200만원	`09.11.27
87		김종인	더만	비례대 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 물)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특별사면복권)	`94.01.28 (`95.08.1 5)

연 번	지 역	후보명	정당	선거구	전과 건수	죄명	형량 (처분결과)	처분 일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 물)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특별사면복권)	`96.08.26 (`97.12.2 2)
88		이철희	더만주	비례대 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안	벌금100만원	`99.01.19
89		김현권	대주	비례대 표	1.	국가보안법위반, 공 문서변조,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소요, 변조공문서행 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형사면특복)	`87.09.05 (`88.12.2 1)
90		이용득	대 주	비례대 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 반	벌금250만원	`92.12.30
						도로교통법위반, 뇌 물공여의사표현	벌금100만원	`94.0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업무방 해	징역1년 (특별복권)	`01.07.18 (`03.04.3 0)
						업무방해	위사항과병합	
						일반교통방해	벌금500만원	`12.11.29
91		정춘숙	더만	비례대 표	1	공문서위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1년 (특별사면)	`88.06.17 (`88.12.2 1)
92		윤소하	정의당	비례대 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85.12.0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Ⅲ 맺는 말

제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의 약 31%가 전과 기록 보유자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을 집행하기 전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의 기본적인 준법의식 및 도덕성은 검증되어야 한다.